

2015.12.01

##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개정

### 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#### • 개정사유

- >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
- >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**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**하여 일치
- > 중소·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
- >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

- 시행일자 : 2015. 12. 01.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#### □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 (안 제45조, 제79조의2)

-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과,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**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**시킴.

2015.12.01

□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(안 제43조)

-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,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

□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(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)

-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관세법」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**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을 30%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**하고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**공장 자동화 기계·기구·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·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을 50%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**하는 한편,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,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.

□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(안 제48조)

- **이사물품 중 보석·진주·별갑·산호·호박·상아 등 물품의 면세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.**